

UR이 기계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오 위 영

(연구지원부 정책연구실)

- '84. 2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학사)
- '90. 2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석사)
- '91. 3-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정 흠

(연구지원부 정책연구실)

- '84.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학사)
- '86. 5 미국 Penn. State Univ. 자원경제학과(석사)
- '90. 5 미국 Penn. State Univ. 자원공학과(박사)
- '90. 3-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1. 序 論

우르콕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1990년대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흐름속에서 국제경제·무역질서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은 일반적으로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경제에 시장실패의 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외부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볼때, 정부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부경제효과는 크나 불확실성도 커서 과소투자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기간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전후방 관련효과가 큰 부품·소재 및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분야는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UR의 규범제정, 특히 보조금·상계조치 협정은 보조금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온 미국, 호주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수출 및 수입 대체 보조금을 비롯한 상당수의 지원제도들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제도의 축소는 바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및 기술개발력 약화로 연결되므로 향후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우르콕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최종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할 것인가 개도국에 유리할 것인가를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단기적

으로 정책선택의 폭이 축소된다는 면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제약요소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부의 산업지원이나 과학기술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 UR협정에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흐름은 TR, GR로 이어져 그 제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UR의 시장접근 협상과 규범제정 분야의 협정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에 대비하고자 한다.

2. 주요협상결과

2.1 시장접근

2.1.1 의의

UR에서의 시장접근협상(Market Access Negotiation)은 한국가의 제품이 다른 국가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도록 수입관세를 낮추고 수입제한,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 이른바 비관세장벽을 줄이려는 협상을 말한다. 시장접근은 크게 농산물과 공산품의 2개 부문으로 대별되지만, 농산물의 수입시장접근(import access)과 수출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은 농산물 협상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접근이라고 하면 주로 공산품(수산물 포함)에 대한 시장접근협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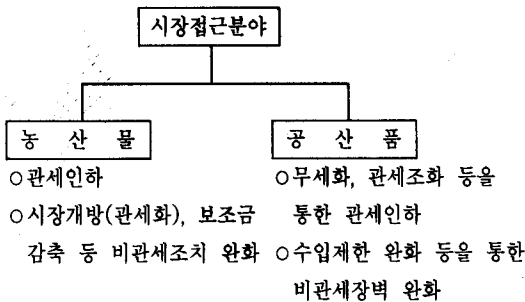


그림 1. 시장접근분야 협상 체계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은 GATT체제의 출범이후 전개되어온 다자간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제5차 딜론라운드에서 7%, 케네디라운드에서 35%, 동경라운드에서 33%의 관세를 인하하여 무역시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이분야의 협상은 UR에서도 '89. 9월 UR의 시작과 더불어 서비스분야의 협상, 규범분야의 협상과 함께 주요한 3대 협상과제로서 집중 논의되어 왔다.

2.1.2 주요내용

시장접근분야 협상은 高關稅로 인한 국제교역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관세인하 및 양허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분야 협상과 비관세조치로 인한 장벽의 철폐내지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분야 협상으로 대별된다.

우선 관세분야 협상의 추진방식은 주요국간 관심품목에 대한 양자간 관세인하 양허협상과 '90. 12월 무역협상위원회 이후 추진된 특정산업분야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무세화 협상과 특정산업분야의 관세를 일정수준으로 인하하자는 관세조화협상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그간 양자간 관세인하 양허협상은 '88. 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시 합의한 관세인하 목표('88. 9월 관세율 기준 33% 인하) 달성을 위해 각국은 상호관심 품목중 주요품목에 대해 우선 고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하였다. 협상결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개도국들은 그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허안에 따르면, 총 9,044품목(HS 10단위 기준)중 7,389개 품목을 양허토록 되어 있고, 양허품목의 관세인하율도 32% 수준에 이르고 있어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과 EC에 의해 제안되어 추진된 무세화·관세조화 협상은 미국·EC간의 상호관심 품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93. 7. 6 Quad 통상장관회담에서 무세화 부문에서 전자, 건설장비, 의료기기 등 8개 품목과 관세조화 부문에서 화학제품 분야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또한 '93. 11월에는 APEC 통상장관 회담에서

전자, 비철금속, 과학장비 등 8개분야에 대해 무세화·관세조화 또는 관세인하에 합의(EC Package)하였으며, 12월에는 미국과 EC가 APEC 합의내용에 대한 절충에 성공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공산품 시장접근에 관한 별도의 협정없이 'UR 의정서' 및 "GATT 1994 제2조 1항 (b) 해석에 관한 양해"에 관세인하방법 및 관세양허계획표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추후 쌍무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2.1.3 우리나라의 협상결과

UR 협상의 개시 이래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C 등 주요협상 대상국들과 상호 관심을 가진 수출입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수출관심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요청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철강, 화학제품 등은 무세화·관세조화에 참여하는 한편, 경쟁력이 약하여 수입의 확대가 우려되는 기계분야의 건설장비, 농업기계 등은 교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세화하였으나 8-10년의 이행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였다.

특히, UR 협상으로 선진국의 관세율 인하 및 양허범위의 확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수출환경 호전으로 전자, 화학, 철강 등의 수출이 증대되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약한 일반기계 분야의 농업기계, 건설기계를 비롯하여 정밀기계 및 이들 주요핵심부품은 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야는 주요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아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바로 수입이 증대하지는 않더라도 기술개발을 위축시켜 기술의 종속화 현상이 심화되어 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행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전략이 요구된다.

2.2 규범제정

2.2.1 반덤핑 협정

반덤핑 관세란 생산자가 국내의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국이 해당 제품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정 이윤을 포함한 정상가격으로 수출해도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에 해당되며, 이러한 덤핑으로 인하여 산업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러한 반덤핑 분야의 협상은 우선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반덤핑 규정을 개정하여 명료화하고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어 덤핑마진과 피해판정 기준의 명료화, 조사기간 및 절차의 강화 등 반덤핑 규제의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고, 우회덤핑 규제제도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반덤핑 규정이 강화된 내용은 원가이하 판매(Sales below Cost)의 인정, 구성가격 산정시 일반판매 관리비 및 이윤산정 기준의 명료화, 가중평균에 의한 가격비교(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기준 설정), 조사 종결을 위한 최소기준(DE Minimis) 설정, 소멸조항 설정, 제소자격 강화 등으로 선진수입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었다.

또한 선진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입국내에서의 단순조립을 통한 우회덤핑 및 제3국 조립을 통한 우회덤핑에 대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우회덤핑 규정은 미국과 수출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여 추후 반덤핑 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함으로써 우회덤핑 규정은 협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통하여 우회덤핑 규제가 명문화 될 경우 해외투자부문의 현지조달 비율의 증가 등으로 현지투자가 상당한 제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덤핑 협상중에서 덤핑마진 및 피해산정시 수입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조사절차 및 기준의 강화(조사개시를 찬성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액이 국내 총생산액의 25% 이상

이어야 제소가능, 조사당국이 피해를 입증)를 통해 동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92년중 반덤핑, 수입절차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총수출의 8.3%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때, UR에서의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는 전자 등 수출주종 품목의 수출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규제하의 수출비중

(단위 : 백만불,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규제하의 수출(A)	10,070	9,994	8,338	7,997	6,325
규제건수	76	77	71	70	70
(반덤핑)	(28)	(28)	(28)	(32)	(37)
(쿼타 등 기타)	(48)	(49)	(43)	(38)	(33)
○총수출(B)	60,696	62,377	65,016	71,807	76,632
○비 중(A/B)	16.6	15.9	12.9	11.1	8.2

2.2.2 긴급수입제한제도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특정제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때 GATT 제19조에 의거하여 수량제한을 하거나 기 양허된 관세를 수정·철회하는 수입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치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부과와는 달리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한 수입제한이기 때문에 발동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UR에서의 긴급수입제한제도 분야의 협정은 선진국들이 엄격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시행중인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 회색조치를 협정타결후 4년내에 철폐하는 대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에 대해 일정기간(최초 발동후 3년) 보상·보복을 면제함으로써 동 조치의 발동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시 특정국에 대해 선별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수량규제시 다자간의 감시하에 특정수출국에 쿼타를 조정·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쿼타조정(Quata Mo-

dulation)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이 시행되면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조치가 철폐되어 수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쌍무협상을 통한 쿼타조정 등의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동 조치의 발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선진국의 동 조치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2.3 기술장벽협정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다자간 무역협상협정(MTN Code)중에 하나인 기술장벽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은 특정국가들이 자국의 표준화 제도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하거나 타국과 다르게 만들어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무역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TBT 협정의 발효이후에도 각국의 표준화제도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는 등 각국의 기술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국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UR 협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기술장벽 분야의 협정은 GATT 체제하의 기술장벽 협정의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규정 이외에 관련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시켰으며, 국제표준의 적용대상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비정부 표준기관도 포함시켰다. 또한 품질인증시스템, 시험·검사의 상호인정, 적합판정의 처리기간 및 절차와 국가표준작업계획을 공표하고 이를 ISO/IEC 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2.2.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대두됨에 따라 '80년대초부터 미국, 일본, EC 등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WIPO 등 기존의 국제기구와는 별도로 GATT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지적재산권의 국제교역에 있어 무역왜곡효과 및 장애를 완화하되 보호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초기부터 엄격한 보호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이에 소극적인 개도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큰 진전으로 보지 못했으나, '91. 12. 12. 던켈안이 제시된 후 이를 바탕으로 각국간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져 협상이 타결되었다.

동 협정에는 도서·문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포도주 등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 의장권, 기술적 발명에 대한 특허권, 영업비밀 등 7개 분야의 권리에 대한 보호내용 및 수준을 담고 있다.

동 협정에는 아직 개념이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선진국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EC 등과의 쌍무협상을 통하여 보호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료가 급증하여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UR의 타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표 2> 기술도입 건당 기술료 수준

	1987	1989	1991
○건당 기술료	6억	8억	16억

2.2.5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직접적인 자금이전(무상양허금, 지분참여(equity infusion), 자금대출)이나 대출보증(loan guarantees), 조세감면 등의 각종지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GATT 제16조에서는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오는 보조금의 지급을 규제하고 있으며, 동경라운드에서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한 협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협정은 보조금의 정의없이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단순히 구분하여 보조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상계관세절차의 미비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했다. 따라서 각국은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주요선진국은 상계관세제도를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분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작된 보조금·상계관세 협상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련된 GATT 규정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보조금·상계관세 타결안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조치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허용보조금의 범위에 연구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및 환경관련 보조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조금은 금지되거나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조치가능보조금의 보조금액이 제품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의 누적적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계관세 효력의 지속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여 상계관세의 규율을 강화하고, 제조자격을 강화하여 제조를 찬성하는 생산업체의 총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명한 생산업체 생산량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하일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과 일부쟁점에 대한 일본, EC 등 여러 선진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미국이 의도한 바와같이 강력한 보조금 규율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협정은 향후 GATT에서의 분쟁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로서 현재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무역 및 산업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협상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2.6 기타 규정

위와 같은 규범외에도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와 세계무역 기구(WTO) 및 분쟁해결절차 등 제도부문에 대한 규범이 있으나, 이런 분야는 본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술개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상계조치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3. 주요 기계산업에 대한 영향

UR 협상의 타결은 세계무역을 감시하고 조율할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을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국제협정 차원에 불과했던 GATT가 전후의 세계경제성장 및 교역확대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여 각종 분쟁을 제대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UR협정안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최대분쟁요소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규범도 마련되었다. 특히,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권, 반도체칩 설계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각국의 연구개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도 UR협정 타결을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WTO 설립후 18개월 이내에 다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술개발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추후 협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에 주어지는 유예기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개발지원 규정과 내용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3.1 UR의 영향에 의한 구조조정

UR 협상은 주요 교역재의 수출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시장접근, 반덤핑협정,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긴급수입제한 조치, 지적재산권 등이다.

특히 시장접근에 따른 각국의 관세인하와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인해 공산품의 교역이 증대될 것이다. 이는 우리 교역상대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제품의 수출증대효과와 우리나라의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대효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관세협상중 무세화 협상이나 관세조화 협상에 참여한 산업의 관세인하로 인하여 교역재의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제품의 수출입 구조도 변화하여 경공업제품보다는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기계 등 중화학 제품의 비중이 증대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계분야내에서도 조선, 자동화, 전자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금속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제품의 측면에서 볼때, 내수제품보다는 수출제품이, 경공업제품보다는 중화학공업 제품이,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제품보다는 자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보조금을 수혜 받는 제품보다는 그렇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이 유리해지면서, 경쟁력이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3.2 기계분야에 대한 영향

3.2.1 일반기계산업

일반기계분야는 대부분 무세화 또는 관세조화 협상분야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무세화 협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중장비, 농기계 분야는 EC지역과 개도국에 대한 증거가 제품의 수출이 약간 증대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국가의 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수출증대효과는 적을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산기계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이들 기계에 대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대일무역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자 금융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3년 이내에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 금융의 수혜를 많이 받은 공작기계, 섬유기계 등은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폐지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수준이 낮은 중전기기는 관세인하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산업기반이 위축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의 일반기계업체는 대부분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의 각종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무세화의 유예기간인 5-8년 동안에 기술을 축적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자금융과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대체제도 없이 폐지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3.2.2 전자·정보산업

일반기계분야와는 달리 전자산업은 UR의 타결로 선진국의 관세인하와 반덤핑,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사용억제 등으로 수출증대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철폐,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등으로 일부 전자제품의 국내시장 잠식도 예상된다. 그 동안 전자제품은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조치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각종 제도의 명료화 및 절차의 강화로 이러한 회색조치들의 남용이 억제되어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가전제품의 수출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산업은 덤핑제소의 요건 및 자격 강화로 선진국의 덤핑조치 남용이 제한되어 아국의 수출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컴퓨터 주변기기가 향후 5년간 60% 관세인하(20% → 8%)

될 경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무세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 주변기기 산업의 보호·육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보조금 규정의 강화로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이 곤란해지고, 특허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기술료가 상승하고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가 확산될 경우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산업은 반덤핑 등 무역규범이 명시화됨에 따라 수출환경의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화되어 수출지향적인 반도체 산업에 수출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EC 등으로부터의 반덤핑 제소 및 조사가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온 전례를 감안할때, UR 타결로 제소가 줄어들어 반도체 수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볼때, 전자·정보산업은 UR 타결로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증가하여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나 지적재산권 및 반도체 회로칩 설계권 등의 강화와 기술료 급증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3 수송기계분야

수송기계분야는 일반기계분야와 전자분야와는 달리 앞으로의 협상 등 명확하지 못한 변수가 많아 정확히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특히 수송기계분야는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진국에서도 각종 보조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WTO 설립후 18개월 이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보조금 관련 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

① 자동차

자동차는 관세장벽과 수출자율규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증대할 것이나, 고급승용차를 중심으로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대체제도 없이 폐지될 경우 일체 자동차의 국제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관세인하와 수출자율규제, 기술장벽 완화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완화 등으로 이미 관세율이 낮은 상태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10% 정도 높은 수준인 EC와

캐나다에 대한 수출과 차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구권 및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자동차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중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허되어 있는 유통개방 3단계 계획이 앞당겨 지거나 개방이 가속화 될 경우 외국차의 국내판매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조선

UR이 타결됨에 따라 선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피해가격 규제 등을 다루고 있는 OECD 다자간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산업은 UR 협상 결과보다는 OECD 다자간 협상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EC의 수출보조금 철폐로 우리업계에 유리한 측면도 있고, 선진국에 비해 저가로 수출하고 있는 국내선박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가능성도 있어 영향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③ 항공·우주

우리나라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허용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전망이며, GATT 민간항공기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보조금·상계조치협정과 기술개발

4.1 산업에 대한 제약

UR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지원은 국제규범의 범위안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의 국제화와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협정은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의 사용을 사전에 금지시키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입 지원정책을 강력히 규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산품 사용을 우대해주는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어 협정 발효 후 3년(개도국의 수출보조금은 8년,

수입대체보조금은 5년)의 경과기간내에 축소하거나 철폐해야만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특정품목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3.25% 이상을 나타낼 경우 동 품목에 제공되는 수출보조금을 2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일부의 일반기계 등이 대부분 이 조항에 해당되고 있어 비록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8년의 유예기간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수출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거나 직접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금융·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능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다.

정부가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선별적 판단에 의해 보조금을 공여하면 이는 조치가능보조금이 되나,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공여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조치가능보조금은 교역상대국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만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며, 조치가능보조금일지라도 보조율이 1%(개도국은 2%) 이하이면 소액보조금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조율이 제품가격의 5% 이상이거나, 특정산업 및 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공되거나, 또는 기업의 채무 감면 또는 상황을 위해 무상지원을 하면 교역상대국에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종류의 지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는 동 지원이 상대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허용보조금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보조금으로서,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 저개발지역에 대한 보조금, 환경보조금 등은 비록 특정부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저개발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일관성있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으며, 기업이 환경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거나 생산공정을 변경하는 등 기존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고자 할때 정부가 1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 범위내에서 무상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때, 국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지원은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며, 특정성이 없거나 특정성이 있는 경우라도 지역개발, 공해방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당장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정산업에 지원하여 수혜상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거나 수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 교역상대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규제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은 제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기효과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4.2 기술개발 보조금 지급 제약

UR 협정문에서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 규정한 곳은 제소불가 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항목이다. 이 조항은 WTO 설립('95. 1. 1 예정) 협정 발효 후 18개월 이전에 각 회원국의 경험과 다른 국제기구의 연구에 따라 보조금 규정의 운영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수정과 보다 상세한 적용규정의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속단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연구보조금 규정의 핵심내용은 지원의 내용이냐 규모에 따라 제소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금중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는 총 연구비의 75%,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은 총 연구비의 50% 이내에서,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초연구는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같은 연구개발이라 하더라도 협정

체약국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산업연구는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의 제품, 공정 및 서비스의 현저한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하여 계획된 조사나 연구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쟁전 개발활동은 시제품을 포함하여 산업연구결과를 판매나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새롭게 수정하거나 개선시키는 계획과 설계 및 도안을 하는 것(제품, 공정 및 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적 공식과 디자인, 그리고 산업적 운용이나 상업적 개발로 전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시제품 제작 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총연구비는 개별연구에 사용되는 총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에는 연구활동에 전적으로 고용된 인력비용, 실험기기 및 장비, 대지 및 건물비용,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 구입비용, 연구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비용, 기타 연구활동비용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초과하는 연구비의 지원은 상계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상계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제3국이 WTO에 제소함으로써 이러한 지원에 상응하는 조치 즉, 지원을 받아 생산한 제품에 대해 동일액만큼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이 선진국의 제소 및 조사에 따라 제품수출에 막대한 장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때, 보조금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연구개발지원체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4.3 기술개발제도에 대한 제약

이상의 연구개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내용과 연구비 지원규모 및 비율 등을 분석하여 허용보조금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술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업의 단독기술개발이 어렵거나 또는 공통

에로기술 개발 및 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공익성이 높은 핵심산업 및 첨단산업 등의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비를 직접 출연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으로 볼때,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핵심산업 및 첨단산업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어 허용보조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정연구과제들의 과제별 연구내용을 보면, 기초연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시제품 제작 포함) 등 경쟁전 개발활동을 벗어나는 연구사업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며,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원비율도 고선명 TV 40%를 비롯하여 신에너지 연구 86%, 차세대 원자로 연구 100%(한전의 부담금을 정부 출연금에 포함)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으로 구분된 연구과제를 우르콰이라운드 연구개발보조금 규정에 따라 산업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각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범위와 지원허용비용 산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G7 연구사업의 경우를 보면 정부의 지원비율이 높고, 세부과제중에는 제품개발이나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지원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소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초, 응용, 개발연구 등 연구과제가 여러단계를 포괄하는 경우 연구보조금의 배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품의 실용화나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제품의 개발 등 개발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구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산업연구의 경쟁전 개발활동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용의 총액이 두 범주의 단순 산출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이 요구된다.

둘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공업발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공통에로기술 및 기술과급효과가 크나 기업의 단독개발이 어려운 응용 및 개발연구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발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의 공통에로기술,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를 위한 기술과제 또는 기업이 보유중인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하여 산·학·연 등의 공동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응용 및 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참여기업수와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에 따라 연구비의 40-8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으로 볼때,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며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허용보조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 과제별로 보조금의 지원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과제가 많으며, 특히 시제품 제작을 포함하여 실용화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과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특히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원은 조치가 능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로 대체하거나 경쟁전 개발활동과 개발연구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제에서 경쟁전 개발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의 연구는 연구소에 시행하고 실용화를 위한 부분의 연구는 연구소 협조를 받아 기업에게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째, 공업발전기금의 산업기술향상자금은 공업발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합리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중에서 공업기술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다. 이 자금은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등을 통하여 자금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은행 등에서 융자금리 연 6.5%, 융자기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기술개발자금이다.

산업기술향상자금은 공업의 균등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며, 운용에 있어서는 기계, 전자기기에 대한 신제품 개발, 섬유류에 대한 신소재 개발, 생산성 향상,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자금지원의 범위가 기계, 전자, 섬유 등에 한정되어 있어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에 문제점이 있다. 특히, 상품화를 전제로 한 연구개발과 산업의 합리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

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된다하더라도 금리부분만이 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반 우대금리나 산업표준금리(CIRR)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 협상 또는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네제,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으로서, 이는 국산화 촉진,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국제수지 개선 등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자금은 국내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최초기업화, 연구시설의 건설과 연구기자재의 구입, 신제품·신기술 개발, 품질개선, 공정개선을 위한 자체 및 위탁연구(시제품 제작비 포함)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동 자금의 융자금리는 11-12% 수준이며, 융자기간은 최고 8년으로서 소요자금의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이 자금지원은 운용면에서 특정성이 없으며, 금리도 시중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보조금에 해당되지만, 지원목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금운용의 목적을 국산화 촉진, 국제수지 개선 등으로 명시할 경우, 금지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완화하거나 적절히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지원은 대부분이 특정성이 없고, 지원목적이 중소기업의 공동태로기술 개발이나 공익성이 높은 핵심기술 및 첨단산업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UR 보조금·상계조치 협정상의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대부분 허용보조금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원에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지원제도에에는 일반적으로 기초, 응용, 개발연구 등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우르콰이라운드에서 분류한 기초연구, 산업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 지겠지만, 상업화를 목적으로 한 시제품 개발은 지

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의 목적을 국산화 촉진, 국제수지 개선,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원목적의 조정이 필요하다.

5. 결 론

우선 우르콰이라운드 협정이 궁극적인 효과로는 각국의 무역왜곡효과 감소로 수출입이 확대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서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이다. 또한 보조금·상계조치 등 국제규범의 제정으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국내 가용자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상계조치 발동요건의 강화로 선진국의 동 조치·남용이 제한되어 수출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우선 보조금의 축소 운용으로 수출증진을 위한 정책 수행상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보조금지급에 대한 규제강화로 각종 지원정책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협정에 비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축소된 점도 부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UR협정 타결을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WTO 설립후 18개월 이내에 다시 검토·논의하게 될 보조금의 개념정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UR 협정에서 “보조금의 공여당국이나 관련 법률이 보조금 지급을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한해 명백히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특정성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 그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협상을 통해 좀더 명확한 정의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개발제도에 대한 점진적인 개편 및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개념정의를 UR에서와 같이 기초연구, 산업연구, 경쟁전 개발활동 등으로 재분류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에 100%까지 지원을 허용하는 규정에서 기초연구의 범위와 연구기관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연구과제별로 여러단계의 연구가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념정의를 통해서 보조금의 지원비율 산정을 명확히 해야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상업화를 목적으로 한 과제의 경우 지원허용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의한 연구와 기업이 담당할 연구분야를 분리하는 방안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을 포괄하는 경우 보조금의 비율이 두 범주 보조금의 단순산술평균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의 적절한 배분 및 지원비율의 축소가 요구된다.

세제, 각종 산업지원제도의 점진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조세·금융지원제도를 비롯하여 수입다변화제도, 국산기계 수요자 금융제도 등은 지원제도를 개편하거나 적절한 제도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지원이 시중금리와 차이가 현저할 경우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제품개발이나 기업화의 지원에 있어서는 특정성과 제소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금지원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리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상업표준금리(CIRR)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금리를 표준금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수입선다변화제도와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등의 지원은 금지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치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제도의 수혜기준 및 지원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여 특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축소해야 한다.

네제, 무세화·관세조화 협상에 포함되었거나 앞으로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제품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주어지는 5-8년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여 기계류의 국산화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긴급수입제한제도 및 반덤핑제도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하여 개도국 제품의 수입증중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때, 정부의 각종 금융·세계지원정책은 제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기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 지원체제의 국제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비록 UR협정에서의 과학기술관련 규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을 비롯한 OECD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보조금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파고가 예상되는 GR, TR 등 새로운 과학기술 질서의 형성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시장접근분야와 과학기술개발에 관련이 깊은 제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협상의 전개방향에 따라 제도나 절차의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상공자원부, UR타결에 따른 주요산업별 영향 분석 및 대책, 1993. 12.
2. 상공자원부, UR협상결과 및 대응방안, 1994. 1.
3. 상공자원부, UR협상 최종협정문, 1993. 12.
4. 송양호, UR보조금, 금융자유화와 산업금융·세제의 개편방향, 산업연구원, 1992. 4.
5. 송양호, UR타결과 산업경쟁력 증대방안, 산업연구원, 1993. 12.
6. 송종국, UR타결과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혁신방향, 기계와 재료, Vol. 6, No. 1, 1994.
7. 정성철, UR이후 세계과학기술질서의 전개방향, 과학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소, 1994. 2.
8. 최낙균, UR타결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산업연구원, 1993. 12.